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7 분판감의원외 3

나. 회 부 일 자 : 2000. 4. 27

다. 상 정 일 자 : 2000. 5. 1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 중 구 의원

나.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는 제1차 정례 회의시 실시하고 제척사유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으로 개정(안 제2조)
-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으로 개정 (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문 찬 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는 "매년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하고 제척과 회피 사항으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감사) ①생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 제1차 정례회의 -</p> <p>③ ~ ⑤ 생략</p>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 ④생략</p>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 - - - - - - - - - - - - - - -</p> <p>② ~ ④(현행과 같음)</p>